

# 健康診断實施要領改正

日本の放射線醫學綜合研究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원자력관련법령의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내의 「방사선작업에 관한 건강진단실시요령」을 개정하였다. 주개정점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피부검사의 내용을 변경
- ② 눈검사의 대상자를 방사선업무종사자 전원으로 변경
- ③ 특별정기건강진단의 검사 또는 검진에 대하여 생략규정을 추가
- ④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대상을 추가

실시요령의 운용에 대한 판단기준은

## 1) 혈액검사

- ① 생리적범위의 취급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회의 건강진단전문위원회가 정한 「혈액검사적용기준범위」를 적용한다.
- ② 혈액검사적용기준범위외인 자의 취급에 대해서는 과거의 검사결과를 참고로 건강관리 의사가 건강상담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.

## 2) 눈검사

법령상 문전하는 기간은 6개월마다이지만, 눈의 타자각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눈검사의 실시기간과 같이 3개월마다 문진표에 기입하여 건강관리 의사에게 제출한다.

## 3) 피부검사

2)와 같이 자타각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문진표에 기입하여 건강관리 의사에게 제출한다.

## 4) 업무상 대량의 방사선을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

- ① 눈에 대해서는 업무상, 첫째 년도에 눈 수정체의 조직선량당량한도 이상의 방사선을 눈에 받은 적이 있는 자로 한다.
- ② 피부에 대해서는 업무상, 첫째 년도에 눈 수정체이외의 조직선량당량한도 이상의 방사선을 피부에 받은 적이 있는 자로 한다.

건강진단실시요령 및 판단기준을 받아서 실제로 건강진단하는 방법은

- ① 문진은 6개월(피폭경력)마다이지만, 3개월마다 자타각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진표로 조사를 실시한다.
- ② 이 문진표를 건강진단의 실시시기에 맞추어 방사선업무종사자에 배부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기입한 후, 건강관리 의사에게 제출한다.
- ③ 문진표에 어떤 이상을 호소한 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의사가 건강상담하여, 그 결과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또는 생략할 것인지를 지시를 받는다.